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민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문제 등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5. 10. 27. ~ 12. 8.)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본문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조(「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3조(「농촌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가.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같은 항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8조(「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환경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6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8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9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0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조(「농촌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5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문화다양성 위원회는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6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회는 제8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8조(「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9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신·에너지정책심의회의회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0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1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5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u>보건복지부장관</u> · <u>환경부장관</u> · <u>고용노동부장관</u> · <u>여성가족부장관</u> · <u>국토교통부장관</u> · <u>해양수산부장관</u> 및 <u>통계청장</u> 2.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u>성평등가족부장관</u> ----- ----- <u>국가데이터처장</u> ----- 2.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후단 신설>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④ (생략)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 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u>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 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 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이 위촉하는 사람</u>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민간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 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 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u> <u>가.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 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u> <u>나.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 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하는 사람</u>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위원 등) ① (생략)	제4조(위원회 위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생략)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 -----.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u>여성가족부</u>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 ----- ----- <u>성평등가족부</u>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u>제2항제3호</u> 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u>제2항제3호</u> 및 <u>제4호</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u>환경부차관</u> 이 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 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u>환경부차관</u> 이 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 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u>기후에너지환경</u> <u>부차관</u> ----- ----- ----- -----.	② ----- <u>기후에너지환경</u> <u>부차관</u> ----- ----- ----- -----.	② ----- <u>기후에너지환경</u> <u>부차관</u> ----- ----- -----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 부, 농림축산식품부, <u>산업통상</u> <u>자원부</u>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 부, 농림축산식품부, <u>산업통상</u> <u>자원부</u>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1. ----- ----- ----- <u>산업통상</u> <u>부</u> ----- ----- ----- ----- ----- ----- -----	1. ----- ----- ----- <u>산업통상</u> <u>부</u> ----- ----- ----- ----- ----- ----- -----	1. ----- ----- ----- <u>산업통상</u> <u>부</u> ----- ----- ----- ----- ----- ----- -----
<신 설>	<신 설>	1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 <u>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u> <u>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u>	1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 <u>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u> <u>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u>	1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 <u>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u> <u>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u>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환경부장관이</u> 위촉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u>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중앙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중앙심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 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나.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8조(중앙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 <u>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u> <u>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u> <u>하는 사람</u> ④·⑤ (현행과 같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 ----- -----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u>환경부차관</u> , <u>여성가족부차관</u> , <u>해양수산부차관</u> , <u>농촌진흥청장</u> 및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 ----- <u>기</u> <u>후에너지환경부차관</u> , <u>성평등</u> <u>가족부차관</u> ----- -----. ----- -----.
2. 3. (생략) <u><신설></u>	2.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② <u>제1항제3호</u> 에 따른 위원의	② <u>제1항제3호 및 제4호</u> -----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u>산업통상 자원부</u>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u>산 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농림축산식품부, <u>산업통 상자원부</u> , <u>환경부</u> , 국토교통 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위 촉하는 사람 <u><신 설></u>	제4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후에너 지환경부</u> 소속 ----- ----- ----- <u>기 후에너지환경부</u> ----- ----- -----. 1. ----- ----- <u>산업통 상부</u>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 ----- 2.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u>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u>

	<u>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u>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u>이 위촉하는 사람</u>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 ----- ----- ----- ----- -----, 이 경우 위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 ----- -----,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위촉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 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委員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u><신 설></u>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	6. ----- 제5호--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 ⑨ (생 략)	----- ----- -----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3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u>환경부</u>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3. (생략)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u><신 설></u>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 ----- ----- ----- -----. 1. -----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 ----- ----- 2. 3. (현행과 같음) 4.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

② <u>제1항제4호</u>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u>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 촉하는 사람</u> ② <u>제1항제4호 및 제5호</u>----- ----- -----. ③ ~ ⑧ (현행과 같음)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략)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환경부장관</u>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u>산업통상자원부</u> · <u>환경부</u>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 6. (생략) <u><신 설></u> ③ ~ ⑦ (생략)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1. ----- <u>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u> ----- ----- 2. ~ 6. (현행과 같음)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 ⑦ (현행과 같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u>여성가족부</u>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환경부장관</u> 이 위촉하는 사람 <u><신 설></u>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 ----- <u>성평등가족부</u> ----- ----- ----- ----- ----- ----- 2. ----- ----- <u>기</u> ----- <u>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③ (생략) ④ <u>제2항제2호</u>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u>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 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항제2호 및 제3호</u>----- -----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환경부장관</u>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 및 제3호</u>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u>제1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4463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15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8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36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기후환경에너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6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7066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4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838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048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63) 238 - 0448